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르면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보조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율 탓에 자치구 별 재정 상황에 따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안전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 모두 치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안전 분야 예산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경우 안전분야는 10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충청남도과 경상북도의 경우 기준보조율의 상한을 따르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이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차별적인 안전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부터 100 퍼센트까지로 상향함으로써 자치구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서울시 민 모두에게 균등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